

제52-3차 정기이사회

■ 일시: 2026년 5월 9일(토) 08:00

■ 장소: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세미나실4

회의 순서

1. 참석자
2. 개회 및 학회장 인사
3. 사업 보고
4. 심의
5. 폐회

[첨부 1] 학술지위원회 2차 회의록

[첨부 2] 한국언론학회 사회책임 특별위원회 운영 규정

[별첨] 신규 회원 신청자 제출 서류

사회: 정성은 회장

기록: 김우정 사무국장

1. 참석자

참석 이사:

정성은 회장 등 총 32명

위임:

권예지 연구이사 등 총 22명

불참:

조성동 연구이사 등 총 5명

※ 재적 이사 59명 중 참석 32명, 위임 22명으로 성원이 충족됨.

2. 개회 및 학회장 인사

정성은 회장은 성원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고, 08시 15분에 52대제3차 정기이사회 의 개회를 선언하다.

회장은 인사말에서 봄철정기학술대회 진행상황에 대해 말하고 학술대회를 잘 준비한 조직위와 사무국과 총무이사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다. 이후 이번 회의에서 다룰 안건에 대해 설명하다. 홍경수 차기회장이 또한 이사들에게 인사하고 학술대회를 잘 준비한 회장과 조직위에 고마움을 표시하다.

3. 보고 안건

제1호 보고: 학술지 발간현황

심민선 학술지위원회 위원이 한국언론학회 학술지 발간 현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보고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언론학보

호수	논문 마감일	발행일	출판 논문 수
69권 6호	2025년 10월 3일(금)	2025년 12월 31일(수)	8
70권 1호	2025년 12월 5일(금)	2026년 2월 28일(토)	7
70권 2호	2026년 2월 6일(금)	2026년 4월 30일(목)	10
70권 3호	2026년 4월 3일(금)	2026년 6월 30일(화)	-
70권 4호	2026년 6월 5일(금)	2026년 8월 31일(월)	-
70권 5호	2026년 8월 7일(금)	2026년 10월 31일(토)	-

70권 6호	2026년 10월 2일(금)	2026년 12월 31일(목)	-
--------	-----------------	------------------	---

2) 커뮤니케이션 이론

호수	논문 마감일	발행일	출판 논문 수
21권 4호	2025년 10월 5일(일)	2025년 12월 15일(월)	2
22권 1호	2026년 1월 5일(월)	2026년 3월 15일(일)	4
22권 2호	2026년 4월 5일(일)	2026년 6월 15일(월)	-
22권 3호	2026년 7월 5일(일)	2026년 9월 15일(화)	-
22권 4호	2026년 10월 4일(일)	2026년 12월 15일(화)	-

3) Asian Communication Research

호수	논문 마감일	발행일	출판 논문 수
22권 3호	상시제출	2025년 12월 31일(수)	7
23권 1호	상시제출	2026년 4월 30일(목)	9
23권 2호	상시제출	2026년 8월 31일(월)	-
23권 3호	상시제출	2026년 12월 31일(목)	-

결과: 원안 접수

제2호 보고: 학술지 국제화 추진 관련 건

심민선 학술지위원회 위원이 학술지위원회 국제화 추진 관련 건에 대해 보고하다. 학술지위원회 2차 회의의 주요 의결 사항인 “언론학보의 국제화(SCOPUS) 추진을 중단하지 않는다. 다만 실질적인 추진은 편집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이 마련된 후에 실행한다”에 대해 보고하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해당 회의록을 제출하다 ([첨부 1] 학술지위원회 2차 회의록 참조).

결과: 원안을 접수하다. 정성은 회장은 학술지위원회 운영규정 4조 1항(“위원회는 학술지 국제화를 위한 논의 주체로서 제반 사항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기반을 마련한다”)를 언급하며 학술지위원회가 마련한 국제화 사업 방침에 따라 정기이사회가 의결하지만 이번 보고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으므로 의결은 따로 하지 않지만 만일 안건으로 상정되면 논의할 수 있음을 설명하다.

제3호 보고: 언론미디어 학회장 라운드테이블

정성은 회장이 언론·미디어 학회장 라운드테이블 논의 사항에 대해 보고하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연구 윤리를 위반한 AI 작성 논문 투고 및 출판 사례에 대한 초학회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학술표준분류명 변경 필요성에 공감하고 언론학회 중심으로 함께 추진하기로 함

4. 심의 안건

제1호 안건: 사회책무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승인에 관한 건

민영 부회장(사회책무특별위원회 위원)이 사회책무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규정의 내용과 제정 과정에 대해 보고하고 이사회 안건으로 제안하다.

운영 규정 제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위원회가 위원회 운영지침안을 마련하여 집행위원회에 제출함
- 2026년 4월 10일 제52-7차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 운영지침(안)에 대해 논의하고, 운영지침을 운영규정으로 변경할 것과 제7조 제1항에서 “학회장에 건의할 수 있다”를 “학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변경할 것을 위원회에 다시 검토 요청하고 이를 조건으로 운영규정을 의결함.
- 위원회가 다시 논의하여 집행위원회에서 제안한 바를 반영하고 추가적으로 제6조(학회의 추천권 행사)의 조항을 보완하여 정기이사회에 제출함.

민영 부회장이 제6조 조항에 대해 설명하다.

의결: 이 안에 대해 이선경 연구이사가 동의하고, 이종희 이사가 재청하다. 만장일치로 사회책무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운영규정안을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제2호 안건: 신규 회원 신청자 가입, 공로회원 인준 심의 및 승인

1. 관련 규정

제6조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에서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의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2.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1호에 상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3.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4.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론 또는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했거나 언론학 관련 연구·교육·학술 분야의 실적이 뛰어난 사람
5. 준회원으로 5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정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6. 언론 또는 관련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하고, 언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제7조 (공로회원)

공로회원은 만 65세 이상의 회원으로 15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학회 활동에 기여한 사람으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8조 (준회원)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의 박사 학위과정에 있는 사람
2.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론 또는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진보래 총무이사가 이번 회기에 15명이 정회원에 신청하고 준회원과 공로회원 신청은 없음을 보고하다. 정회원 신청자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연 번	성명	생년	현 직	최종 학력	최종 학위	해당 조항
1	김*미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연구원		박사	제6조 제3항
2	김*정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박사	제6조 제3항
3	김*재		KBS 부장급 기자		박사	제6조 제3항
4	김*미		서강대학교 미디어융합연구소 선임연구원		박사	제6조 제3항
5	박*려		국민대학교 강사		박사	제6조 제3항
6	박*효		영남대학교 객원교수		박사	제6조 제3항
7	서*택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부장		박사	제6조 제3항
8	오*연		MBC 기자(차장)		박사	제6조 제3항
9	윤*나		경북대학교 강사		박사	제6조 제3항
10	이*준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사	제6조 제3항
11	임*주		국민대학교 부교수		박사	제6조 제3항
12	장*미		성신여자대학교 조교수		박사	제6조 제3항
13	정*연		배재대학교 교강사		박사	제6조 제3항
14	편*란		경상국립대학교 조교수		박사	제6조 제3항
15	호*현		前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박사	제6조 제3항

의결: 정회원 신청자 15명에 대한 자격요건 심사를 거친 결과 신청자 전원을 정회원으로 승인하기로 의결함.

5. 폐회

더 이상 논의할 안건이 없음을 확인한 후, 정성은 회장은 참석 이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08시 50분에 폐회를 선언하였다.

7. 작성 및 확인

위 회의록은 제3차 정기이사회회의 논의 및 의결 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이다.

2026년 5월 14일

작성자: 사무국장 김우정

확인자: 회장 정성은

[첨부 1]

학술지위원회 2차 회의록

■ 일시: 2026년 4월 8일(수) 20:00~21:00

■ 참석: 백혜진(위원장), 김균수, 유홍식, 이철주, 정동훈, 심민선(간사)

– 위원 7인 중 6인 참석, 1인 위임(안순태)

■ 회의 안건

- 1) 특별세미나 결과 보고 및 관련 사항 논의
- 2) 한국언론학보의 국제화 추진 관련 의견 수렴

1. 특별세미나 결과 보고 및 관련 사항 논의

(1) 특별세미나 <우리는 ‘신문방송학을 하고 있는가? 한국연구재단 학술표준분류 체계의 개선 방안> 개최와 경과 보고

– 2026년 2월 27일(금), 한국언론학회 주최, 학술지위원회 주관으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함. 본 세미나는 학술지위원회 기금으로 일부 후원함

– 발제: 김현석(서울대), 현행 학술표준분류체계의 문제와 과제

– 종합토론: 박진우(건국대), 손동영(한양대), 심민선(인하대), 유선옥(한경국립대), 이재국(성균관대), 이창준(성균관대)

– 세미나 이후, 현행 중분류명(신문방송학)을 대체할 안에 대해 TF가 사회자와 토론자들과 서면의견을 수렴한 결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2인), 미디어학(2인), 커뮤니케이션학(2인), 미정(또는 신규 분류명 1인)으로 의견이 분산되어, 합의안 도출에는 이르지 못함

– TF 진행상황: 봄철 학술대회에서 별도의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기에는 아직 학회 내 합의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향후 개별적으로 2차 특별세미나 개최 추진 예정. 한편, 봄철 학술대회에서는 학회장 초청 라운드테이블이 예정되어 있어 해당 자리에서 본 사안을 소개하고 의견을 요청할 계획임

(2) 중분류명에 대한 학술지위원회 위원 의견 및 추가 논의

– 커뮤니케이션학 명칭이 상위 개념이어야 하는데 동의(김균수, 유홍식, 이철주 위원)

– 의견 유보(정동훈 위원)

(3) 향후 세미나에서의 학술지위원회의 역할

- 향후 2차 특별세미나 개최 시에도 학술지위원회가 주관으로 참여하고 위원회 기금으로 후원하는 것으로 결정함

2. 한국언론학보의 국제화 추진 관련 의견 수렴

(1) 안건설명

- 백혜진 위원장이 국제화 추진 지속 여부에 대해 학술지위원회에서 논의 및 의결이 필요하다는 학회장의 요청에 따라 본 안건의 논의 필요성을 설명함. 국제화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방향이 제시됨:

- ① 국제화 추진을 중단한다고 결정할 시 전체 회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등 의견 수렴 방법 검토
- ② 국제화 추진 방침은 유지하되, 현 정동훈 언론학보 편집위원장 체제의 편집시스템 개선을 우선 완료한 이후로 추진 시점 조정 및 유보

(2) 위원회 의결 사항

가. 국제화 중단 여부에 대한 회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반대

- 학회 학술지의 미션을 먼저 정립한 후 국제화 추진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회원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됨
- 실무적으로도 참여율 및 의결 기준(참여 비율, 찬성 비율 등) 설정이 쉽지 않음
- 국제화 추진은 회장의 리더십과 실행 체계 구축이 핵심이며, 이를 회원 투표로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 해당 사안은 학술지위원회의 판단과 집행부의 연속적 노력으로 결정할 문제로, 다수결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아짐

나. 국제화 추진 중단 - 반대

- 언론학보의 국제화 추진을 현 시점에서 중단하는 것에는 반대하며,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함
- 국제화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 언론학보의 영문학술지 재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단, 학회 집행부와 누리미디어의 협의사항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함)

(3) 언론학보의 국제화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학술지위원회 내 다양한 의견

가. 국제화 추진 찬성 의견

- (시기적 적절성) 현재 연구 인력과 역량이 확보된 최적의 시기이며, 이 시기를 놓칠 경우 향후 국제화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 장기적으로 학보의 국내외 위상 약화 가능성도 존재함
- (연구자 혜택) 학술지 국제화는 논문과 연구자의 국제적 가시성을 제고하고, 국제적 색인 및 인용 확대를 통해 회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함
- (기반 일부 마련) 언론학보의 국제화 추진은 국제화 추진은 역대 여러 회장단의 공약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미 작성지침 개정·영문초록 등 초기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 구체적 실행 계획 수립 시 달성 가능한 목표임

나. 언론학보 국제화 추진에 대해 유보적 의견

- (실행 구조의 문제) 초기 국제화위원회 구성 당시의 리더십과 이후 실행 과정 간에 간극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임. 국제화 추진을 위해서는 편집위원회 및 저자 구성의 실질적 변화(국제적 다양성)가 요구되나, 편집위원장의 업무 부담 과중으로 병행이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됨
- (전략적 대안) Asian Communication Research(ACR)가 이미 SCOPUS에 등재되어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ACR을 학회 국제화의 핵심 타겟 저널로 삼고 SSCI 등재를 추진하는 것이 언론학보의 SCOPUS 등재보다 실효성과 회원 혜택 측면에서 클 수 있음
- **현 언론학보 편집위원장 의견:** 현재까지 추진한 언론학보의 시스템 개선은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 편집이사, 편집간사 간 역할 분담과 효율적인 업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제 시스템이 일정 수준 안정화된 것으로 평가됨. 차기 편집위원장 체제에도 해당 시스템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국제화 추진을 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학술지 위원회에서 차기 편집위원장 선임 시 국제화 추진 의지 확인 및 국제화 전담 역할 설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다. 지속적인 논의와 방향성 유지 필요

과거 국제화 추진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들 간의 연계가 충분하지 않았고, 학회장 교체에 따른 의지 및 관점의 차이로 인해 논의의 공백과 단절이 반복되어 온 문제가 있었음. 학술지위원회에서 위원 승계, 회의록 관리 등을 통해 국제화 논의가 특정 집행부의 임기에 종속되지 않고 학회 차원의 중장기 과제로 지속되도록 하는 역

할을 말아야 함.

[첨부 2]

한국언론학회 사회책임 특별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26.05.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언론학회(이하 '학회')의 정관 및 윤리강령에서 정한 사회적 책임 이행의 내용과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설치한 학회 사회책임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① 위원회는 2인의 당연직 위원과 5인의 추천직 위원으로 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은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총무이사로 하며, 추천직 위원은 회장이 추천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 간사 1인을 두며, 총무이사가 맡는다.
- ⑤ 위원회는 학회의 사회 책임 이행과 관련한 중장기적 과제를 수행하거나 언론 및 사회적 의제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자문 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학회 내·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구성한다.
- ⑧ 위원 중 결원이 생길 때 학회장은 15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기간이 60일 이내일 경우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직무)

위원회는 학회의 사회 책임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회 책임과 관련한 학회의 학술 활동에 관한 사항
2. 학회장, 학회 정관에 규정한 위원회, 연구회 또는 학회원 등이 의뢰한 사항
3.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기구로부터 위원 추천 등 공식 의뢰를 받은 사항
4. 위의 각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학회원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4조(회의)

- ① 회의는 월 1회 열리는 정기 회의와 필요한 때 열리는 수시 회의로 구성하며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에서 개최한다.

- ②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정기 회의의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 회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위원 등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며, 각 위원의 검토, 확인을 거쳐 확정한다.
- ⑥ 회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 ⑦ 회의에서 결정한 주요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 게시, 뉴스레터 게재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개하며, 신속한 공개가 필요한 경우 회원의 이메일이나 SNS를 이용할 수 있다.

제5조(기피·제척·회피)

- ① 제3조에 규정한 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위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용되면 기피 신청된 위원은 해당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배제된다.
- ②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기피·회피 또는 자격이 정지된 위원은 제3조 제3호에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일반 회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제6조(학회의 추천권 행사)

- ① 제3조 제3호에 따른 학회의 추천권 행사와 관련하여 학회는 회원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자격 등을 정하여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 이메일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한다.
- ② 언론 또는 미디어 관련 학회 간 협의가 필요한 추천권 행사의 경우,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 기간 중 신청한 회원 또는 위원회가 추천하는 회원 중에서 전문성, 학회 활동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관련 학회 간 협의에 참여할 1배수에 해당하는 회원을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학회 간 협의에 참여하려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신청일 기준으로 학회 정회원이 된 지 3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2. 추천권 행사와 관련한 분야에서 학술적 성과나 실무 경력 등 전문성을 제시하는 경우
 3. 방송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동일한 추천권 행사와 관련하여 다른 학회의 처리 절차에 신청 또는 참여하지 않는 경우
- ④ 법령에 따른 추천권 행사를 학회가 독립하여 직접 행사하는 경우, 또는 학회가 일정한 수의 피추천 대상자를 정하여 제2항의 관련 학회 간 협의체에 보고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이때 피추천을 신청하는 회원은 신청서에 해당 기관의 직무수행 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 ⑤ 제4항의 경우 위원회는 재적 위원 5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학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해당 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 회원이 학회의 정관이나 윤리강령 등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위원회는 재적 위원 전원의 찬성 의견으로 추천의 철회 및 추천 철회 결정의 학회 홈페이지 게시를 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언론·사회적 의제에 대한 의견표명 등)

- ① 위원회는 언론이나 사회적 의제에 대해 제3조 제2호에 따라 학회의 참여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학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복수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제00대 한국언론학회장 000'와 같이 학회장 명의의 참여나 의견 표명
 2. '제00대 한국언론학회 집행위원회' 등과 같이 학회 내 기구 명의의 참여나 의견 표명
 3. '한국언론학회'와 같이 학회 명의의 참여나 의견 표명
 4. 학술 활동 전개
 5. 중장기적 대응 과제 지정
 6. 기각
 7. 판단 보류
- ③ 위원회가 요청한 제2항 제3호를 집행하기 위해서 학회장은 회원의 승인 및 의견 표명 형식 등에 대해 적절한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단 학회원이 개별적으로 의견 표명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존중한다.

제8조(보고서의 작성·제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활동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

회장에게 보고한다.

1. 위원회 활동 내용
2. 학회의 사회 책무 이행 및 대내외적 학술 활동에 대한 평가
3. 학회의 사회 책무 이행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에 대한 평가와 제안

제9조(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26.5.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2조 (총회의 승인) 제2조 제7항의 총회의 승인에 관하여는 집행부의 특별위원회로 구성, 운영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